

의정부지방법원 2019. 10. 22 선고 2019가단1399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0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. 7. 25. 접수 제34943호 및 1998. 2. 26. 접수 제10931호로 각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한윤옥

별지